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강화 등 〉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92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	3
2.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강화 등	9
3. 사모펀드 운용사 대주주 등의 변경 시 등록의무 신설	21
4.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31.
3. 회 부 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한 사유를 추가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5).

나.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9조의16).

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

IV. 검토의견

1. 총괄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란 ①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②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을 의미하며, 개인도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됨.¹⁾²⁾

[표1] 사모펀드의 구분

구분	운용사	투자자
일반 사모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자
기관전용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업무집행사원 (GP, General Partner)	유한책임사원 (LP, Limited Partner)

(자료: 금융위원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⑩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제16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 2) 사모펀드는 사모의 방법으로 펀드를 발행해야 하므로 투자권유대상인 일반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이어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사모”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의 제도적 연혁을 살펴보면,

- 1998년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 일부 자산운용 및 공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일반 사모펀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해외 PEF(Private Equity Fund, PEF)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응하기 위해 舊 사모투자전문회사를, 2009년에는 해외 헤지펀드에 대응할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위해 舊 적격투자자 사모펀드를 차례로 도입하였음.
- 이후,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운용목적에 따라 분류되고 투자자 범위는 동일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체계를 구축³⁾하였으나, 운용목적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에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제공에 제약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투자자의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되, 기본적인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하면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표2] 사모펀드 제도개편(2021년)

구분	종전	현행
분류 체계	사모펀드 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동일)	사모펀드 투자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운용 자율성 강화)
투자자보호 및 운용규제	투자자 보호수준 <선별적 강화>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현행 유지>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제외 <현행> <개선>	운용 규제 <규제 일원화·완화>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 <현행> <개선>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PEF 시장 추이를 살펴보면, PEF 약정액은 2007년 9조원에서 2024년 153.6조원으로, 같은 기간 PEF 수는 44개에서 1,137개로 증가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국내 PEF는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전통 금융이 투자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음.⁴⁾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2025. 12.

[표3]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 추이

(단위: 조원, 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PEF 약정액	9.0	14.6	20.0	26.6	31.8	40.0	44.0	51.2	58.5	62.2	62.7	74.4	84.3	96.7	115.6	125.3	136.4	153.6
펀드수	44	76	110	148	181	226	237	277	316	383	444	580	721	847	1,050	1,098	1,126	1,137

(자료: 금융감독원)

□ 반면, 이와 같은 PEF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치중하여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하고, 시장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 PEF는 투자자 측면에서 장기투자 자산에 해당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보유 지분기간이 3~5년 수준이므로 상대적으로 단기적 시야의 경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PEF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⁵⁾

□ 이에 2025년 12월 금융당국은 PEF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되,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공적규제와 시장규율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①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확보, ②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③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5)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표4]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 ◆ PEF의 **책임성·건전성**을 제고하되, PEF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율체계 마련
- ◆ 해외 PEF와의 규제차익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
- ◆ 사적계약에 기반한 PEF의 특성을 감안, **공적규제**와 **시장규율**이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방향	추진과제
① GP의 책임성 확보	① 위법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취소 ② 부적격 대주주 의 시장 퇴출 ③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②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① 업무집행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의무 확대 ②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③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	①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②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③ PEF의 기업인수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방안”, 2025. 12.)

□ 개정안은 이 중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 확보”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으며, ①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강화, ② 사모펀드 운용사 대주주 등의 변경 시 등록의무 신설, ③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조문별 검토는 이하에서 서술하기로 함.

□ 참고로, 2026년 1월말 기준 총 10건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개선에 관한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표5]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관련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차입한도 규제	투자대상 기업 관련 운용규제	공시· 회계감사	금융당국 보고의무 강화	투자자 정보제공	내부통제 강화	GP 등록요건 강화
김현정 의원안 (10657)	· 차입비율 200% 초과시 금융위 승인 및 외부평가 의무화			· 특수관계인 거래시 이해 상충 여부			
민병덕 의원안 (11715)			· 공모펀드의 수시공시 도입 (일반사보限) · 회계감사 의무화	· 펀드 분기별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 보고서		
김남근 의원안 (11824)				· 투자대상기업 자산담보 차입, 자산매각·배당 · PEF와 투자 대상기업간 이해상충 여부	· 투자대상기업 자산담보 차입, 자산매각·배당 · PEF와 투자 대상기업간 이해상충 여부		
정혜경 의원안 (12182)	· 차입비율 한도 축소 (400→200%)	· 경영참여목적 투자시 지분 증권 5년 이상 의무보유 · 사모펀드가 투자한 투자 대상기업의 기업인수 제한	· 기업인수시 투자자명, 출자비율 공시				
한창민 의원안 (12222)	· 차입비율 한도 축소 (400→200%)	· 기업주식 취득일 후 2년 자산유출 의결권 제한	· 회계감사 의무화 (일반사보限) · 재무상태, GP보수총액 등 공시	· 펀드 보고 정보 확대	· 자산운용 보고서	· 내부거래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신장식 의원안 (13581)	· 차입비율 한도 축소 (400→200%)	· 기업주식 취득일 후 2년 자산유출 의결권 제한				· 내부거래행위 관련 내부통제 강화	
김승원 의원안 (14027)				· 금융위 보고 요구권 신설			
김상훈 의원안 (15057)	· 차입비율 200% 초과시 외부평가 의무화	· 경영참여목적 PEF 배당 등 이익금 5년간 재출자					
유동수 의원안 (15792)						·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 주요출자자 적격성, 물적설비 등 요건 추가 · 등록 취소사유 확대
한정애 의원안 (15809)	· 차입비율 200% 초과시 사유, 영향, 관리방안 보고	· 기업 인수시 근로자 통지 의무 부과		· 투자대상기업 현황, PEF 투자현황, GP 지급 보 수총액 및 주요 임직원 보수 합계액	· PEF 운용현황,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업무위탁 현황		

2.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강화 등

- 개정안은 ①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에 적절한 정보 교류차단 체계,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충분한 전산설비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②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최소 자기자본 요건 미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영업,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미충족, 재무제표 미제출 등의 경우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5).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는 것	4. ----- -----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신설></u> ② ~ ⑤ (생략)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u>등록요건</u>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⑧ ~ ⑩ (생략) <u><신설></u> <u><신설></u>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영위하고자 하는 기관전용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완화된 요건을 말한다</u>)-----. ⑦ ----- ----- ----- -----.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생략) ⑫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최소 자기 자본에 미달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미달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1년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의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고를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6.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⑬ 금융위원회는 제12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현행	개정안
⑪ (생략)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으로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임원 적격성,
 일정 수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⁶⁾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에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 이에 따라 2024년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무집행사원은 총 873사이며, 이 중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업무집행사원은 437사로, 2018년(254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6] 업무집행사원 등록 현황(2024년말 기준)

펀드 설정(개)	업무집행사원 수(사)	비율(%)
미운용	436	49.9
운용	437	50.1
1	170	19.5
2	99	11.3
3	55	6.3
4	36	4.1
5	22	2.5
6	14	1.6
7	6	0.7
8	7	0.8
9	3	0.3
10	3	0.3
11	5	0.6
12	4	0.5
13	2	0.2
14	3	0.3
15개 이상	8	0.9
합계	873	100

(자료: 금융감독원)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표7]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업무집행사원 구성 현황

(단위: 사)

구분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말
전업	168	210	246	294	312	316	328
	(66.4%)	(69.1%)	(73.2%)	(74.6%)	(75.2%)	(74.9%)	(75.1%)
금융회사	37	38	37	45	46	52	55
	(14.5%)	(12.5%)	(11.0%)	(11.4%)	(11.1%)	(12.3%)	(12.6%)
창투계회사	49	56	53	55	57	54	54
	(19.1%)	(18.4%)	(15.8%)	(14.0%)	(13.7%)	(12.8%)	(12.3%)
합 계	254	304	336	394	415	422	4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 2025. 6.

□ 한편, 현행법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 정지 기간 중의 업무, 금융위원회의 시정·중지명령 미이행,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의 반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⁷⁾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 그런데, 기관전용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 및 업무집행사원 증가에 따라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업무집행사원의 경영 및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출자자의 적격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정보교류 차단체계 및 전산설비 등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등록요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등록취소 사유를 등록요건 미비, 반복적인 위법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더하여, 현행법에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등록의 직권 말소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운용 중인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없는 업무집행사원이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업무집행사원이 전체 업무집행사원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업무집행사원의 신청 없이는 등록의 취소 또는 말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과 정보교류 차단체계, 전산설비 등을 추가하고, 등록취소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집행사원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⑧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8]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GP 등록요건	○ 1억원 이상 자기자본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적격성 충족 ○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 ○ 내부통제기준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1억원 이상 자기자본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적격성 충족 ○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 ○ 내부통제기준 + <u>정보교류차단체계</u>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 <u>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u> ○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GP 등록취소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업무 정지기간 중 업무 ○ 시정·중지명령 미이행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반복 등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 업무 정지기간 중 업무 ○ 시정·중지명령 미이행 ○ <u>[별표6]*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 PEF 해산, 업무정지, GP·임원 등 해임요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 반복 등
GP 등록 직권말소	-	○ 6개월 이상 자기자본 요건 미달 ○ 1년 이상 미영업 ○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미달 ○ 재무재표 미제출, 금융위원회 미보고 ○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 한편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운용사의 등록자격을 판단할 때 사모펀드와 관련 계열사의 최근 10년 간 형사, 민사, 행정법규의 위반 이력을 중요하게 참고하며⁹⁾,

9)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p.257.

운용사가 고의로 「증권법」(Securities Act), 「증권거래소법」(Securities Exchange Act),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s Act), 「상품거래소법」(Commodity Exchange Act) 등을 위반한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운용사가 영업을 중단하였거나 운용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운용사의 취소 신청 없이도 GP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¹⁰⁾

-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규제를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EU는 10% 이상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운용사를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운용사가 인가 후 12개월 내 미영업, 인가 포기, 과거 6개월 동안 미영업, 서류 조작 또는 변칙적인 방법의 인가, 인가 승인 조건 불충족, 중대하거나 체계적인 사모펀드 규제법(AIFMD) 위반 등의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¹¹⁾

- 다만, 개정안은 주요출자자의 적격성을 등록요건에 포함하면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주요출자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p.86.

11)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pp.123~124.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례¹²⁾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개정안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회사에서의 주요출자자에 대응되는 대주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¹³⁾하고 있다는 점, 「금융지주회사법」과 같이 “주요출자자”

12) 「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허가 및 등록의 요건) ①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호 및 제5호는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
2.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③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¹⁴⁾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율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향후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주요출자자 요건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미 대주주 변경승인제¹⁵⁾ 및 최대주주 자격심사제¹⁶⁾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4)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주요출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나. 은행지주회사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제19조의2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금융회사(「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업무집행사원 등록 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정보교류체계 요건을 신설하려는 내용(안 제249조의15제1항 제4호)과 관련하여, **한국사모펀드운용협의회**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 증권·인수·주선 등 기업금융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고 사실상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만 수행하므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적고, 이미 정관 및 투자자의 감시체계로도 내부통제 실효적으로 작동 중이라는 점, 정보교류차단체계 구축 비용은 중소 운용사의 경영 부담을 심화¹⁷⁾시켜 시장 진입 장벽 및 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제31조제1항의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변경승인요건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17) 국내 운용사 대부분은 소수 인력 중심의 프로젝트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교류체계 요건 신설시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규모가 큰 해외 운용사에 비해 시장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 사모펀드 운용사 대주주 등의 변경 시 등록의무 신설

-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이하 “대주주 등”)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3제9항 및 제249조의15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 ⑧ (생략) <u><신설></u>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제5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u>
<u>⑨</u>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⑩</u> -----제9항----- ----- ----- ----- ----- -.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 ⑩ (생략) <u>⑪ 업무집행사원의 지분을 취득하여 제1항제6호의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는 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u>

-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249조의2제2항18)), 앞에서 살펴본 개정안

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 적격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안 제249조의15제1항제6호).

○ 한편, 등록된 운용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요건 유지 의무가 적용되나, 대주주등 적격성 요건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주주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대주주등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시 적용되는 적격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대주주등에 대하여 최초 업무집행사원 등록 시 대주주등의 적격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적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등록 이후 완화된 요건을 이용하여 부적격자가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사모펀드의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다만, 대주주등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시에도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점, 현행법상 대주주등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의무가 이미 규정¹⁹⁾되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5.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주주등 변경 시 별도의 등록의무를 추가하기보다는 등록 시 적용되는 적격요건을 갖추도록 명시하는 입법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8조(보고사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때
2.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삭제 <2015. 7. 31.>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5.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6.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7.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양수한 때
8.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9.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10.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때
11.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
12.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한 때
1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 개정안은 업무집행사원에게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등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1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16(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신설>	제249조의16(내부통제 등) ①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②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운용 업무를 영위하는 전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5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신설>	③ 업무집행사원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① (생략)	④(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 ----- ----- ----- -----.
③ ~ ④ (생략)	⑥ ~ 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 ----- -----.
1. ~ 19의4. (생략)	1. ~ 19의4. (현행과 같음)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4항----- -----
20. ~ 29. (생략)	20. ~ 29.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9조(과태료) ① ----- ----- -----.
1. ~ 12. 삭제	
13. ~ 41의3. (생략)	13. ~ 41의3. (현행과 같음)
<신설>	41의4.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신설>	41의5. 제24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현행	개정안
42. ~ 49. (생략)	<u>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u>
② (생략)	42. ~ 49.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삭제	③ -----
2. ~ 10의3. (생략)	-----
<신설>	-----.
11. ~ 21. (생략)	2. ~ 10의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10의4. 제249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u>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자</u>
	11. ~ 2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을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²⁰⁾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법령의 준수, 건전한 경영 및 이해관계자 보호 전반을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²¹⁾하고 있어, 업무집행사원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에 대한 내부통제 규율 수준은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도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역할이 확대된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대상은 집합투자재산 운용 규모가 5천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업무집행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운용규모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²²⁾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 및 법령상 의무의 실효적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을 임명하여 준법감시 정책과 절차를 집행하도록 하고, 법인과 임직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계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그 적절성 및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²³⁾

○ EU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하여 건전한 사무절차, 회계 및 자료보관 절차 등을 수립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특히 임직원의 거래 및 펀드 거래의 주요 사항을 관리·기록하고 펀드 운용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를 마련하고 있음.²⁴⁾

□ 다만, 개정안 제249조의16제1항은 법령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이 조에 한하여 “내부통제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제44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으로 이미 정의²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23)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pp.100~101.

24) 한국금융연구원,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2025. 8., pp.135.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려는 내부통제기준은 “업무집행사원 내부통제기준”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